

선 람	기관의 장



제29호 2021. 7. 21.(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1-271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1-272호 광양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	4
광양시 고시 제2021-274호 광양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	6
광양시 고시 제2021-275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8
광양시 고시 제2021-276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10
광양시 고시 제2021-277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4
광양시 고시 제2021-281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폐지 고시	16
광양시 고시 제2021-283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18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1-140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허가 고시(공고)	19
광양시 공고 제2021-1404호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
광양시 공고 제2021-1410호 광양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공고	29
광양시 공고 제2021-1415호 도로 지정 공고	31
광양시 공고 제2021-1420호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3
광양시 공고 제2021-1423호 도로 지정 공고	50

회 람										
--------	--	--	--	--	--	--	--	--	--	--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1. 7. 21.
2.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붙임조서 참조) 2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2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구간 설정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구간 설정 조서

2

옥정로180번길

연번	도로명	도로 구분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옥정로180번길 (1차중속도로)	길	굴약동	성황동 산 8-10	중군동 180-2	도면 참조	116	8	20	7-1	7-12	옥곡과 정산에서 명명 및 기초번호식 번호 부여	

왕바위길

연번	도로명	도로 구분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왕바위길 (1차중속도로)	길	봉강면	봉강면 지곡리 864-1	봉강면 지곡리 864-40	도면 참조	496.98	3	20	172-1	172-50	왕바위라 불려진 큰바위에서 명명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옥정로180번길



왕바위길

광양시 고시 제 2021-272호

광양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1.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1. 7. 21.
2.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1건(붙임조서 참조)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2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명 변경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명 변경 조서_옥정로180번길

연번	구분	도로명	도로구분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변경사유	부여방식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기존	옥정로 (종속도로)	길	성황동	성황동 60-1	옥곡면 원월리 487-4	도면 참조	759	4	20	180-1	180-7 6	신청에 의한 변경	옥곡과 정산에서 명명 및 기초번호식 부여
	변경	옥정로180번길 (주도로)	길								1	76		

현황도면



광양시 고시 제 2021-274호

광양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1.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1. 7. 21.
2.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붙임조서 참조)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명 변경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명 변경 조서

연번	구분	도 로 명	도로 구분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부여 사유	유사 도로명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기존	옥동길 (종속도로)	길	옥룡면	용곡리 730-2	용곡리 745	도면 참조	154	4	19	45-1	45-16	행정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
	변경	옥동1길 (주도로)	길		용곡리 730-2	용곡리 산212		502	3	20	1	50		

현황도면



광양시 고시 제2021-275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1. 7. 21.
2.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붙임조서 참조) 1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구간 설정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구간 설정 조서

연번	도로명	도로 구분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옥동1길 (1차중속도로)	길	옥룡면	옥룡면 용곡리 730-3	옥룡면 용곡리 산209-2	도면 참조	172	2	20	3-1	3-18	행정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광양시 고시 제 2021-276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광양읍 기두1길 11	2021. 7. 21.	건물철거 (※상세내역 붙임참조)
2	전남 광양시 봉강면 명암길 16		
3	전남 광양시 진상면 학연로 1-2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388, 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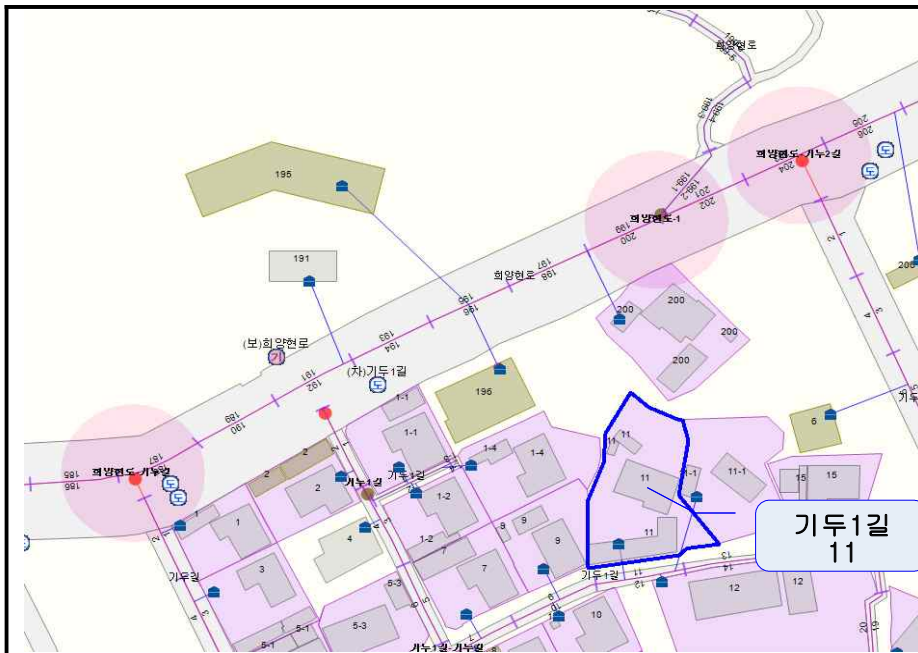
2021. 7. 21.

광 양 시 장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기두1길	11	광양읍 용강리 737-1	▶ 건물철거 (건축과-9360(2021. 3. 9.)호에 의거)	2021. 3. 9.	2021. 7. 21.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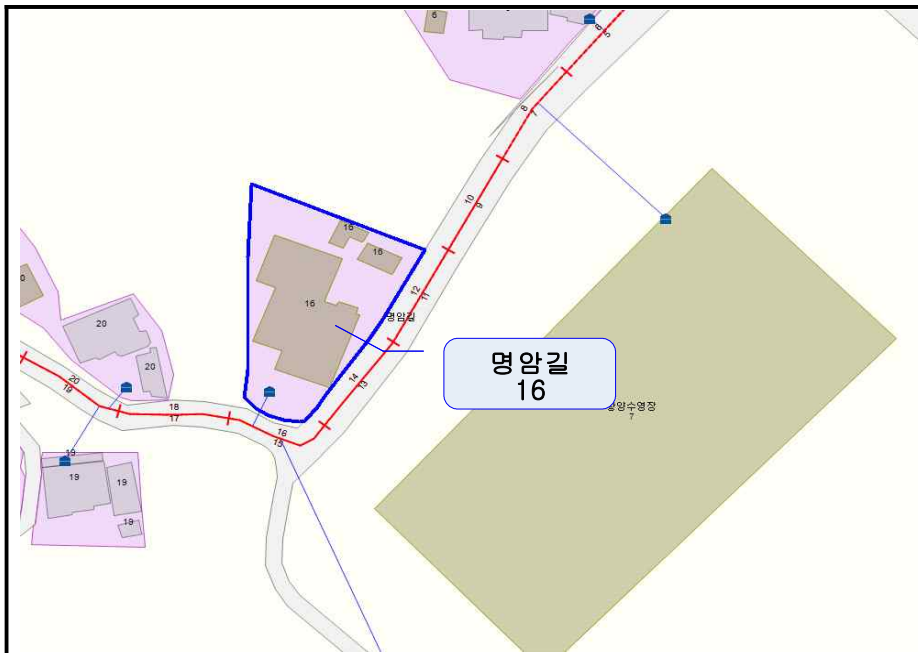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명암길	16	봉강면 석사리 122-8	▶ 건물철거 (건축과-5301(2021. 2. 5.)호에 의거)	2021. 2. 5.	2021. 7. 21.

☐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학연로	1-2	진상면 섬거리 299-3	▶ 건물철거 (건축과-236(2021. 1. 5.)호에 의거)	2021. 1. 5.	2021. 7. 21.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광양시 고시 제 2021 - 277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1.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김시식지1길 5(태인동)외 6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 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7.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계	건물번호 부여 7건						
1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28-249	전라남도 광양시 김시식지1길 5 (태인동)	20210721	20081001	김을 최초로 양식한 위치라 해서 작명,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386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명암길 78-2	20210721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3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울천리 811-1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울천길 40	20210721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167-9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2길 23 (마동)	20210721	20111229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5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642-2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매천2길 77	20210721	20180516	매천 황현 사당 및 생가에서 인용	
6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311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10길 49 (마동)	20210721	20191113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7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763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광영의암7길 3-8	20210721	20200603	사업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시 고시 제2021-281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1. 7. 21.
2.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폐지(붙임조서 참조) 1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구간 설정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구간 변경(1차종속구간 폐지) 고시 조서 및 도면

순번	구분	도로 위계	도로명	도 로 구 간						폐지사유	행정 구역
				시점	종점	기초번호	길이 (m)	폭 (m)	간격 (m)		
1	폐지	길	옥동길	옥룡면 용곡리 573-2	옥룡면 용곡리 산234	100-1 → 100-136	1340	4	20	해당 도로구간(1차종속)을 사용하는 건물 미존재	옥룡면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광양시 고시 제 2021-283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변경 내역〉

연번	도 로 명 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1	옥룡면 옥동길 45-15	옥룡면 옥동1길 3-15	2021. 7. 21.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2	옥룡면 옥동길 45-6	옥룡면 옥동1길 5		
3	옥룡면 옥동길 45-7	옥룡면 옥동1길 3-5		
4	옥룡면 옥동길 45-8	옥룡면 옥동1길 3-2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7. 21.

광 양 시 장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2021-140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광 양 시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김+홍	주소	순천시 조례1길 +
소하천명		석정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광양시 문강리 820-40		
	면적	1,200㎡	매천부지(麻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2. 20. ~ 2026. 2. 19.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농작물경작)		

첨삭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6만분의 1 지형도)

광양시 공고 제2021-1404호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개정 이유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0. 12. 8. 공포 / ‘21. 6. 9. 시행)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광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목적, 주소정보 사용 확대에 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 비용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주소정보위원회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제11조, 제15조)
-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추진에 대한 사항(안 제13조)
- 주소정보 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안 제1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1. 7. 16. ~ 8. 6.(21일간)

6.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6일까지 광양시장(참조: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se2nnnny@korea.kr

2) 주 소: [57785]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3) 팩 스: 061-797-2576

라. 문의처: 광양시 민원지적과(전화: 061-797-338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

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시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 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광양시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주소정보업무 담당 국장 및 주소정보·도로·교통업무 담당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 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 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 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 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양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2에 따라 둔 광양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둔 광양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2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광양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양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광양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21.

광 양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7. 21. ~ 2021. 8. 4. (14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도로명 변경(붙임조서 참조)
4. 의견제출 기간 : 공고기간 내
5.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서식 작성 제출(시청 민원지적과 비치)
6. 도로명 변경 절차

도로명 변경신청 ▪ 주소사용자의 4/5이상 동의	신청 받은 날부터 ⇒ 30 일 이내	의견수렴공고 14일 이상	의견 수렴한 날부터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	-------------------------	---------------------------	------------------------------------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 신청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도로명주소팀 ☎ 797-2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 상

□ 도로명 변경 조서(옥정로)

연번	구분	도 로 명	도로 구분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변경 사유	부여방식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기존	섬거길 (종속도로)	길	진상면	진상면 섬거리 622-4	진상면 섬거리 954-1	도면 참조	596	4	20	55-1	5-66	신청에 의한 변경	행정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변경	섬거5길 (주도로)	길								1	55		

※ 도로길이(m)는 약간의 변동의 있을 수 있음

□ 현황도면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1. 7. 21.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1. 7. 21. ~ 2021. 8. 5.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소유자	길이	너비	도 로 위 치	면적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766번지	김원구	16.5m	3m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766번지	23.0㎡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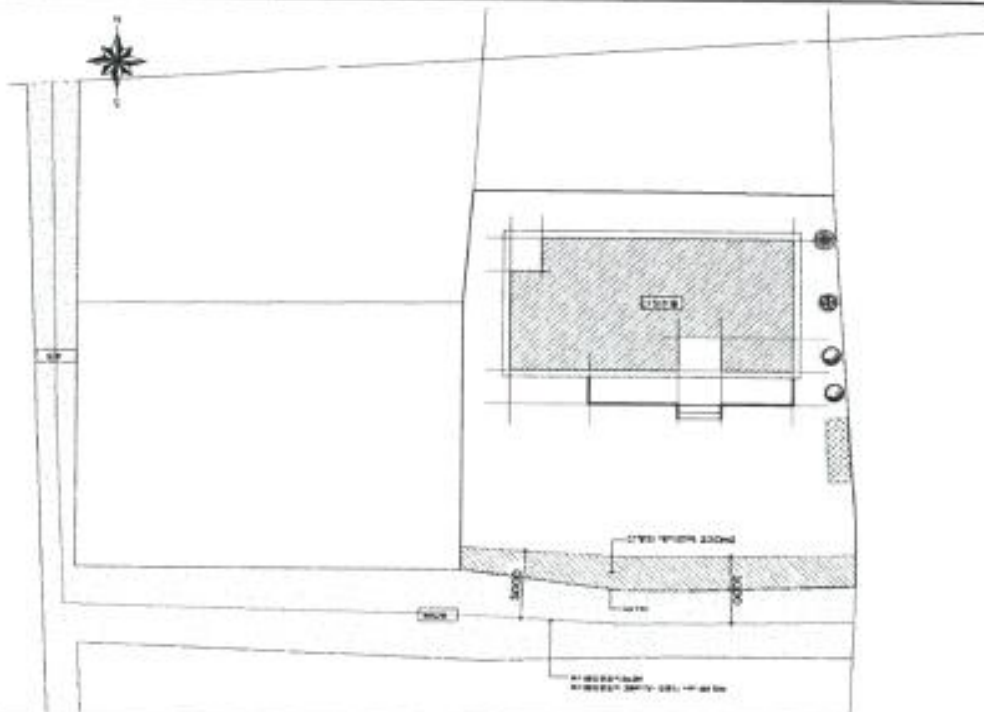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에 명시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위임된 사항 근거 마련
-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 규정 정비
- 알기 쉬운 단어 및 폐지, 개정, 제정된 타 법령 정비

3. 주요내용

-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수당 등 규정 신설 (제48조~제52조)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입장료 감면 조항 정비(제53조)
- 알기 쉬운 단어 및 폐지, 개정, 제정된 타 법령 정비

- 「지적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당해 → 해당(제45조제3호), 기재한 → 기록한(제59조)으로 변경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21. 7. 20. ~ 8. 9.(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공원과, 전화 061-797-4721, FAX 061-797-4191, E-mail : yunl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정 명 :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2】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1조”와 “「건축법」 제32조 등 건축인·허가”를 “「주택법」 제35조와 「건축법」 제42조 건축허가”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2조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나목 중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5조제2호자목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로 하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4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광양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5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 앞에 “제3절 요금”을 삭제한다.

제53조 앞에 “제3절 요금”을 삽입한다.

제58조(중전의 제53조) 제1항제5호 중 “각 호의 사람”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13.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제59조(중전의 제54조)제3항 중 “기재한”을 “기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별표 4 제목 중 “제48조제1항”을 “제53조제1항”로 한다.

별표 5 제목 중 “제50조”를 “제55조”로 한다.

별표 6 제목 중 “제55조”를 “제6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 <u>같은 법 시행령</u> 」에 따라 광양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u>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u> 및 <u>제6호</u> 에 따른 공간·시설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 ----- ----- ----- ----- <u>제2조</u> ----- ----- -----.
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 8. (생략)

제30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민간건축물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녹화, 창문 화단녹화, 벽면녹화, 담장 개방녹화 또는 실내조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21조와 「건축법」 제32조 등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건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35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5.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6. ~ 8. (현행과 같음)

제30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택법」 제35조와 「건축법」 제42조 건축허가-----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42조(점용허가대상 공원) 시장
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
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3조(공원 점용허가의 세부기
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원 안에서 점용허가의 세부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략)

나. 「지적법」에 따른 필지
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
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
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 (생략)

4. ~ 6.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제42조(점용허가대상 공원) -----

-----.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3조(공원 점용허가의 세부기
준)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가. (현행과 같음)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

-----.

다.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44조(점용허가대상 녹지) 법 제 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녹지

제45조(녹지 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 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아. (생 략)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점용허가대상 녹지) ----

-----.

1. ~ 3. (현행과 같음)

4.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5조(녹지 점용허가의 세부기준)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른 도로로 점용허가를 해야 한다.

3. 영 제4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경우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을 말한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한다.

제3절 요금

<신 설>

-----.

3. -----

----- 해당 -----

-----.

<삭 제>

제4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
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
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신 설>

심의

제4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
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는 자로 한다.

1. 광양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3. 그 밖에 도시공원·녹지·도
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신 설>

<신 설>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
는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
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5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신 설>

<신 설>

제48조 ~ 제52조 (생 략)

제53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
조제1항 각 호의 사람

6.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
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
자

<신 설>

<신 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
원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요금

제53조 ~ 제57조 (현행 제48조부
터 제52조까지와 같음)

제58조(요금의 감면)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
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7.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②·③ (생 략)

제54조(준용) ①·② (생 략)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
로 가족

13.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14.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준용)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 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
제한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신 설>

제55조 (생 략)

제56조 (생 략)

[별표 4]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제48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5]

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제50조
관련)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제55조 관련)

③ -----

----- 기
록한 -----
-----.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60조 (현행 제55조와 같음)

제61조 (현행 제56조와 같음)

[별표 4]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제5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5]

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제55조
관련)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제60조 관련)

광양시 공고 제2021-1423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1. 7. 22.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1. 7. 22. ~ 2021. 8. 6.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소유자	길이	너비	도 로 위 치	면적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699번지	박희덕	20.19m	3m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699번지	11.5㎡	동 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